

第55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行政委員會會議錄

第1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6年9月12日(木) 午後2時

場 所 第1小會議室

議事日程

1. 區政業務報告
2.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區域區間境界調整意見聽取案
3. '96年度第1次城北區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案件

1. 區政業務報告(總務局 所管)(城北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區域區間境界調整意見聽取案(城北區廳長 提出) 15面
3. '96年度第1次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城北區廳長 提出) 25面

(14時03分 開議)

○委員長 徐化錫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성북구의회 1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區政業務報告(總務局 所管)(城北區廳長 提出)

○委員長 徐化錫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 소관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구정업무보고를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총무국장입니다. '96년도 저희 총무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사항으로서 보고올리기 전에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고 현재 추진중인 것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총무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 중에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네, 김수영위원님.

○金壽榮委員 김수영위원입니다. 민방위사항에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작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제가 전임국장님 계시 때 질의를 하고 또 보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민방위과장께서 또 바뀌셨기 때문에 생소하시지만 실무자들이 이곳에 오셨으면 그 당시의 상황을 상기하시리라고 믿고 질의합니다.

첫째 문제는 비상정호, 비상급수시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해서 다음 번에 예산반영시에 반드시 예산을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예산 가운데 비상정호와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보완대책을 반영했는지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금 현재 유사시에는 군의 동원소요를 충족하는 예비군 동원관계가 있겠고 또 민방위대에서는 재난이나 복구 구호 문제 등을 책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개 축이 실제 상호 실질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지 여부와 맺고 있다면 어떻게 맺

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위원님. 박시준위원님.

○朴時俊委員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성북여건으로 봐가지고는 체육시설 확충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월곡산하고 개운산에 국한된 지역에서의 체육시설물만 다시 교체를 하고 보충을 하는 그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오는 체육시설 확충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좀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은 말고 새로운 어떤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발굴해가지고 체육시설을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현재 우리 정릉천 올라가는 도시고속화도로가 있습니다. 종암2동서부터 제기동까지 고수부지 현재 하천 좌측 우측으로 고수부지가 아주 굉장히 활용하기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성북구민들의 청소년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광장 도로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최동환위원님.

○崔東煥委員 MT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MT활성화 사업으로 조직구성원간 일체감 조성하고 새로운 공무원상 정립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데, 저는 물론 이런 내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MT교육을 통해서 직원들의 친절교육, 제일 문제되는 것이 어쨌든 조직구성원간에 단결이라든가 이런 형태는 굳이 MT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집단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친절에 대한 교육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보고한 걸로 봐서는 도저히 MT교육을 통해서 어떤 친절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했을 때 친절교육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는지 아직도 저도 가끔 민원부서나 그쪽을 제가 전화를 걸어보면 굉장히 저 자세고 또 고압적인 자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특히 민원부서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에 대한 MT이외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작년과 올해를 거쳐가지고 해피망측한 그런 꼴을 봤는데, 제 표현이 지나치다면 정정하겠습니다만, 구청 현판에다 우수광고물 전시라고 해서 주관과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총무국 소관이면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니면 상관없습니다만, 우수광고물 전시회라고 해가지고 수상작품들을 보면 전부다 영문으로 만들고 영문으로 된 간판들 그런 간판들밖에 선정안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시각적인 면에서만 치중해서 선정한 것이 아닌가, 이왕 할 것이면 우리말 살리나라든지 아니면 좀 더 의식이 함양되어 있는 그런 선정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총무국 소관이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텍스 지방공사 설립 추진에서 올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사장님 임원의 선임에 있어가지고 선정 절차라든지 어떤 식으로 꾸려나가겠다는 그리고 일반 민간인들이 참여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전 언론에서도 이것이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요, 사회복지지초 수요조사 이 자체가 다분히 사생활 침해우려가 있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아무런 시 사업이라고 하는데, 아무런 제재라든지 아니면 구의회에서 심사절차없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왔는데, 이런 문제있는 수요조사를 그냥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다음에 김진권위원님.

○金振權委員 김진권입니다. 생활체육교육시설 및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 이 문제에 대해서 생활체육교실의 여러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이 품목에 지도교사 선임문제, 어떤 방법으로 지도교사를 선임했으면 지도교사가 매일 그 시간에 나와주지 않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어떤 날은 나오고 어떤 날은 안나오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평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취미교실운영해가지고 여기에 여러가지 나와있는데, 이 중에 취미교실에 참석하는 우리 구민이 수강료 아닌 수강료를 낸다는 것도 있는데, 그것이 수강료를 정식으로 걷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들의 지도교사의 수고에 보답하

기 위해서 수강자 자신들이 어떤 회합을 해가지고 다만 얼마씩이라도 걸어서 보답을 하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분명치 않아가지고 그것이 주민들의 여론의 대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체육시설확충 및 정비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난번 어느 회의때인가 구정질문에도 나왔습니다만, 베드민턴장 가리개 천막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각 공원에 베드민턴장에 보면 물품보관함이라고 있습니다. 물품 보관함에 물론 베드민턴 그 운동 경기 시설에 관한 것을 보관도 하지만 거기에 보면 취사도구가 아주 골고루 갖춰져 있어져가지고 아침등산 조깅하는 분들의 공해로 취사공해로 인해서 매연이나 이런 관계때문에 취사를 하지 않는 아침 조깅하는 분들은 그 공해에 시달려가지고 맑은 공기를 못마시고 결국은 매연과 취사에서 나오는 냄새때문에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徐化錫 여기까지만 우선 질의받고 답변 듣고 또하죠. 그러면 4분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박시준위원님하고 김진권위원님은 사회진흥과장이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합니까? 바로 답변해주시겠어요?

○社會振興課長 金永洙 사회진흥과 것은 제가 답변을...

○總務局長 白亨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總務局長 白亨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수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비상정호에 대해서 예산 반영을 했느냐, 죄송합니다.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박시준위원님께서 저희 체육시설 확충문제에 대해서 월곡산 구역만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체육시설을 발굴해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릉천 고속화도로 주변 종암동에서 제기동까지 고수부지를 활용해서 자전거 광장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예.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최동환위원님이 질문 주신 MT활성화와 관계해서 직원 친절교육 전화 친절관계,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직원 친절전화 이 문제는 기획 있을 때마다 교육, 회의 때 여러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제 자신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관계 회의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만, 우리 최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MT활성화 프로그램에도 친절교육을 넣고, 기획있을 때마다 전화 친절히 받기 친절히 대하기 이것을 기획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우수광고물 전시 작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도 우리 최위원님과 동감을 표시하고 관계 국에 저희 최위원님 말씀을 전달해서 충분히 참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스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가 저희는 사실은 시에다 진작 올라가 가지고 시에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본청에서도 이런 회사를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희 구청이 먼저 관계 서류를 올리니까 시가 입장이 딱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가 본청 자체적으로도 이런 비슷한 회사를 검토하고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더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참여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조례를 올릴때 저희 구청이 51%, 민간이 49% 이렇게 이미 그때 보고를 드렸고, 지금 민간참여 원칙을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못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저희가 우리 최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수요조사 문제에 대해서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고 문제가 있는 수

요조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본청에서 내려온 계획에 의해서 그대로만 수행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다르게 더 문제점을 가지고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김진권위원님 말씀이신데요. 생활체육에 지도교사 선임방법은 어떻게 하고 그 시간에 만나올때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저희 생활체육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취미교육에 참석하는데 수강료는 저희가 정식으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한국무용은 13,500원 월, 건강디스코도 13,500원, 사군자는 5천원, 노래부르기 교실 5천원 이런 식으로 정식으로 저희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金振權委員 그 수강료 받는 것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무용 13,500원, 건강디스코 13,500원, 사군자 5천원, 노래부르기교실 5천원, 서예 5천원, 한문서예 5천원, 종이접기 6,600원, 인테리어 소품 5천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여타 부분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과장님 답변 더 하시겠어요?

○民防衛災難管理課長 崔泓淵 예,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먼저 김수영위원님께서 비상정호 및 비상 급수시설에 대한

○委員長 徐化錫 답변하신 것은 생략하고, 답변이 안나온 것에 대해서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崔泓淵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위사시 예비군과 민방위대원간에 유사시 및 평사시 상호 관련성과 실제로 관련을 맺고 있다면 어떠한 구체적인 관련을 맺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평상시에는 예비군을 유사시 대비하여 전투력 향상 훈련으로 2박3일간의 동원훈련을 받고 민방위대에 관한 상호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상 또는 재난 발생시에 1차적으로 민방위 대원을 동원하여 재난을 수습하고 그래도 재난이 수습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2차적으로 지역 예비군을 동원하여 수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사시 또는 재난발생시에는 민방위대원과 예비군간에 상호 연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됐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永洙 사회진흥과장이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나머지 몇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용지와 시설 확보에 대해서는 박시준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개 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부지를 찾아가지고 천장산 지금 KAST 밑쪽에다 한 30평을 확보해가지고 체육시설을 2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시범단지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될 것 같으면 내년부터 확대해서 정릉쪽으로도 확산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를 확보하는 문제는 상당히 좋은건데 저희들 입장으로는 하수과에 하천문제라든지 그런게 검토가 돼야 되겠고 또 예산이 한 두푼 들어가서 될 사안이 아니라서 검토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김진권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도교사 선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자격과 경력이 있습니다. 채용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이 있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생활체육교실이 잘 안될 적에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헌신적으로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고 있는데 연말부터는 저희들이 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정식으로 자격과 경력에 맞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하도록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에서 수강료 외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 없고 예를 들어보면 자기들끼리 동호인끼리 수강이 2개월 코스가 끝나고 나면 돈을 만원씩 걷어서 놀러를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오는 사람을 주기 위해서 돈을 걷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있으면 단호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배드민턴 가리개와 천막, 물품보관 문제는 저번에도 행정위원회에

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시다만도 저희들 입장에서선 배드민턴 하는 사람도 생활체육이지만 등산이나 조깅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활체육인 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될 그러한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사회진흥과는 거기에 대한 단속권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지도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질적인 단속이나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저번에 그런 이야기 나왔을때도 저희들이 공문으로 시행도 하고 배드민턴 협회에도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시정되도록 요구를 한적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어떻게 흡족한 답변이 나왔습니까? 답변이 미진하면 보충질의를 해주시죠. 김진권위원님.

○金振權委員 지금 말씀하신 배드민턴장에 물품보관함에 취사도구 그것이 매일같이 아침마다 취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단속원은 공원녹지과 소속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사회진흥과하고 공원녹지과가 어떻게 협조를 하면 그것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것을 좀 강구해주시고 만약에 국립공원이나 이런 공원에서 취사를 했을 때 엄청나게 부과되는 벌과금, 이런 법적 제도장치도 엄청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시다만 근간에 있는 성북구 자체 근교에 있는 공원에서 매일같이 취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분명히 그것을 명심하시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취미 레크리에이션 교실에 지도교사 수강료가 아주 소액으로 이것을 정식으로 걷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금액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조금 이것 보다 많은 금액을 걷어서 매달 지도교사한테 전달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김진권위원님 말씀에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장이 조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해가지고 저희 총무국에서는 우리 국 소관이 아니니

까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앞으로 공원녹지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근절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취미레크리에이션 수강료가 제가 말씀하신 금액하고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다음 김수영위원님.

○金壽榮委員 국장님, 성질상 길게 질문하고 길게 답변해 주시는데, 용서해주신다면 일문일답으로 하는 게 시간이 좀 빠를 것 같아서,

○委員長 徐化錫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해도 좋겠습니다.

○金壽榮委員 아까 민방위사항,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군과 민방위와 사실상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있는데 사실상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인 액션(action)을 취하는 데는 현재 구체적인 협조체계나 뭐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충무계획을 할적에 요새 군부대 인원이나 필수요원들이 충무계획에 합류해서 같이 cpx를 합니까?

○總務局長 白亨奭 예,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金壽榮委員 지금 이것이 잘 안된다면, 제가 알고 있는 건 잘 안됩니다. 형식상 와서 앉아 있고 몇사람만 있다 가는데 충무계획은 분명히 그것은 전국적인 어떤 비상사태가 돌발했을 때 민, 관, 군이 합세해서 정말 국가재난이나 비상사태를 이겨내기 위한 합동채널인데 사실 형식상 몇사람만 앉아 있고 민방위과장만 왔다갔다 고생하고 나머지 군부대도 강건너 불보기 하고 이러면 소용없습니다. 충무계획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적인 비상과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다음 충무계획할 때는 저희들도 한번 불러주시고,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상시에는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이 계획이나 상호연대관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급할 때는 매달릴 곳이 민방위하고 군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

계획을 관장하고 있는 구청에서 이 문제는 계획을 완전히 짜임새있게 해서 정말 실질적인 훈련이 안되면 안되리라 생각해서 그러니까 충무계획 발전시키실 때 군하고의 연대관계를 구체적으로 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번째, 지금 현재 제가 알고있는 게 매주 목요일날 예비군 자원결산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과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거예요. 실제 잘하고 있습니까?

○民防衛課長 金永洙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壽榮委員 하고있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면 민방위과장도 안오고 담당도 안와요. 방위병들끼리 앉아있다고. 그러니까 뭐가 틀리냐면 자원결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똑같은 예비군대원 각 동이면 동별로 해가지고 동사무소하고 예비군 동대하고 자원이 100명이면 100명 일치해야 돼요. 일치안해요. 그 원인이 뭔대요? 자원결산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깨비 군대모양 어느 곳에서는 100명 나오고 어느 곳에서는 120~30명 나오는 원인이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을 내가 잘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신지 얼마안된 민방위과장께서 발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서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民防衛課長 金永洙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金壽榮委員 하나 더, 그래서 내가 관련이 있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동청사 내에 예비군 동대본부가 들어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동대본부가 동청사 내에 있지 아니하고 인근 또는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을 제가 한 대여섯군대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라면 지적할 수도 있어요. 이 현재 예비군 동대에 관련된 민원인이 전출입이나 기타 다른 사항으로 드나드실 때에는 한 청사 내에서 바로 일을 보시도록 해야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인적, 시간적, 물적, 더군다나 예비군 동대본부에 드나드는 분들은 노약자입니다. 부인들. 그다음에 집에서 시간있는 분들이지 실제 해당예비군 대원들이 안드나들어요. 바쁘니까.

심지어는 그 임신한 주부가 몇층 꼭대기를 오르내리고 하는 것도 좋은데 한 청사도 아니고 다른 곳에 가 있는 데는 일보고 또 와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민원 친절하는데 이 분야는 취약분야입니다. 조사를 해보시고 이 문제 대책은 근본적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답변을 원치 않는 것은, 근본적인게 안나올 겁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때 이것은 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먼저 질의한 문제는 일단 종결을 짓고, 또 다른 위원님? 운흥노위원님.

○尹弘老委員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사업 관련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93년10월 중국 북경시와 우호교류 협정체결 이후 3년이 다 되어가는데 성북구 실무대표단이 북경 순의현 방문 이외에 당초 목적에 따른 관내기업체 해외진출 또는 성북구 발전에 기여되는 사업의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북경시 순의현 실무대표단 방한 예정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실무적인 상호 발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俞鎮武委員 운흥노위원님 질의에 추가질문합니다.

○委員長 徐化錫 유진무위원님.

○俞鎮武委員 지난번 갔다와서 성과는 부구청장님이 약방사후문적으로 들었습니다. 저희가. 우리 구의회는 구청이 있고 구의회가 있는데 지난번에 구청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우리는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할 것인지 또 계획이 어떻게 별도로 서 있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사업보고에 보면은 세군데 자매 결연을 한다고 했는데 중국이 순의현만 오고 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나머지 그러면은 두군데는 사장시킬 것인지 사장시키지 않으면은 어떻게 새로운 방침이 서 있는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오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徐化錫 운만환위원님.

○尹晚九委員 운만환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질의에 앞서 한말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있다가 하시고 제 질문사항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난 입사회 때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번에 성북구 질문요지 추진사항, 답변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단, 질문사항을 위원이 질문을 할 때 질문사항요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이것이 질문요지 및 답변설명서하고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이만큼 제출해 가지고 질문을 했었습니다. 질문내용요약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관계관 되시는 분들은 우리가 질의하고 질문을 해봤자 본 요지요약이 안되고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을 바에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본위원이 이 앞번에 입사회때 구정 질문한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여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M·T 활성화 교육에 있어서 사실 민선 지방자치 시대 이전에는 관계 공무원들이 아주 고압적인 자세에서 주민을 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는 본위원은 주민 생활 편의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M·T 교육활성화 시키고 교육을 시켜봤자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관내에서도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주민이 당신 제발 주민 앞에 나오지마십시오 하고 못나오게 했어요. 수십가구 주민이 당신이 나옴으로써 주민이 서로 불편하니 아예 나오지마십시오 하고 계속 따라다니다가 참견지않고 다른 사람들만 다녀왔었습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관의 입장에 서서 자기가 전부 답변하는 양, 자기 말이 법인양 대답을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위원은 M·T 활성화 좋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양교육도 제대로 못받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 관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회에 다음에는 우리 직원들에게 정확한 교육을 시키셔서 진짜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체제로써 주민에게 편의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기획예산과에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초수요 조사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여기하고는 상반된, 조금 비슷한 이야기

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동네 한가구, 한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우겠지만은 사회 진흥과도 소속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모든 자생 단체나 이런 데에 협력할 때 기초조사 실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어떤 면이 가장 사회적인 면에서 편리한가, 이것이 조사가 먼저 앞서야 되는데 옛날에 흘러온 방식대로 그런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이번 기회에 꼭 구청 관계된 그런 데가 아니더라도 성북구 구민이면은 어느 누구든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초 수요 조사가 되었으면은 합니다.

세번째 사회진흥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활성화 및 자연보호 운동 추진이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7월, 8월 두달간에 앞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해 왔습니다. 말로만 매주, 매월 첫째주 금요일날 국토 대청결운동이라해서 사람 동원해서 하천변이나 이런데에만 가서 치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국토대청결운동은 내집앞부터 쓸기운동해서 모든 동네, 자기집 앞부터 동네로 확산되어 구로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릉, 청수장, 어디다해서 거기만 청소한다, 아니면은 하천변만 청소한다 이것이 국토대청결운동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8월에, 7월에 두달간에 걸쳐 청소년 자원봉사, 청소년 100여명들을 데리고 실질적으로 청소를 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정말로 저도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피는 사람들이 아주 문제가 있어요. 쓰레기 거의 절반이 담배꽂초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문동에서 9월 2일날 200명이라는 주민이 나와서 또 한번 청소했어도 청결운동은 아직 요원하구나, 지난 몇년전까지만 하더라도 새마을 운동이라는 운동이 매월 하루씩 각 동네 청소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이 거의 사라진 오늘 현 시점에 진짜 주민 스스로가 뭔가 내집앞부터 한번 자기 방을 청소할 줄 알아도 자기집 밖의 청소는 못한다 자기 방에다가 담배꽂초 버리라면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가래침 뱉으라면은 뱉지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범 성북구 구민 대청결 운동을 매월, 하루라도 시행했으면은

하는 마음입니다.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및 취미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돈을 받고 취미생활 교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질의할 것은 각 동네에 이러한 장소가 있으면은 어디든지 강사를 모실 수 있는 지, 그러한 자체를 구에서 대리해 주시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공산이 있어서 그 동네 주민의 활성화를 해서 전체적인 일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도 외래 전문강사를 보내주실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總務局長 白亨奭 윤홍노위원님이 국제교류 도시간 우호교류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죄송합니다. 윤위원님, 저희가 지금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성북구 관내에 기업체내지는 서울시 기업체와 순의현 기업체간에 교류라든가 문화 교류 기타 여러가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확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을 해 윤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진무위원님, 지난번 저희 구청 실무진들 방중에 대해서 질책을 주셨습니다. 그때 저희가 비공식으로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저희 생각은 실무진 방중이고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못 드렸던 것을 유감을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한번 유감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순의현외에 다른데에는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 저희가 당초에 캐나다 브랜트시하고 일본 가시와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두 도시가 조금 부진합니다. 부진 이유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희 측에는 없고 상대측에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캐나다 브랜트시도 저희가 여러번 팩시도하고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식이나 하면은 모든 경비를 우리보고 대라 이런 식이니 그

렇게 해가지고는 저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한국의 방식으로든 그래서 사실은 추진중입니다만은 좀 부진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운만한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정확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시한번 맹성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M·T 활성화전 하고 관련해서 주민 생활 편의가 우선아니냐, 관의 입장만 운운할 일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아까도 제가 답변 올린 바 있습니다만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맹성을 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도록 교육 기타 여러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기초수요 조사관계에 대해서 성북구민이면은 누구나 다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아까 제가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이것은 본청 지시에 따라서 그대로 거기다가 써넣는 그런 형식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이런 문제를 저희가 자치단체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과 관계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형식적인 면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내집앞부터 쓸기 운동이라는 것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범성북구구민 대청결운동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방법을 저희가 한번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 체육교실 및 취미, 레크리에이션하고 관계해서 각동에서 장소가 있을 때 그런 강사를 모실, 지원할 수가 있겠느냐, 아울러서 저희가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俞鎮武委員 보충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유진무위원님.

○俞鎮武委員 아까 제가 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할려고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순의현에서 나온 것보면은 10월16일이 있거든요. 날짜가. 기획상황실에서 구체적인 세부적인 안이 있느냐는

것이고 아까 내가 물어본 것인데 답변이 조금 빗나간 것 같고 그리고 캐나다하고의 제1안이 안되었다면은 2안이 있을 것이고 3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1안가지고 계획을 추진했다면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 또 일본의 얘기는 지난번에 저희가 들었을 때에는 아라가와구하고 되어 있다라고 되었는데 지금 엉뚱한 생소한 얘기가 들리는데 아라가와구는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자매 결연을 의식하고 다녀온 것은 들었는데 저희가 다 회신도 주고 받았는데 우리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엉뚱한 얘기를 하나까 좀 의아해서 예산이 잘못 흘러가고 잘못 쓰여지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물어봅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잠전에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캐나다하고 일본외에 다른 국하고는 타진을 못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도시를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우호관계해서 예산을 한푼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호 교류협정 체결조인 10월16일 10시에 날짜가 지금 잡혀있는데 전체적으로 그 분들 오시는 데에 대한 일정은 지금 잡혀있습니다만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는데 우선 제가 생각 나는대로 보고를 드리면은 의회하고 관계해서 저희가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저녁 만찬도 있고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 환송만찬회도 있고 이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위원님께 서류를 올리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네, 김수영위원님.

○金壽榮委員 유진무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을 제가 얘기를 하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그러나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저도 일본을 다녀온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일본의 아라가와구를 저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고 사전에 이것이 구의회 자체내에서 의장단이나 의원들하고의 조율여부에 관계없이 또 집행기관인 구청하고의 사전 조율여부 관계없이 제가 느낀 아라가와구에 대한 인상은 상당히 진지하고 적극적이었다는 사항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전 조율여부가 썩 좋지를 않아서 결과도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쪽에서

다녀와가지고 사후에 사후보고를 다 드렸는데 일고의 검토나 답변이 없었다는 사실을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아라가와구에 대해서 차후에 자매결연을 추진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검토를 하시겠다면 검토하시고 서면 답변을 하실 것을 질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은 무엇을 사전에 해야 되는지 그 사항도 아울러서 답변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김수영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 후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崔東煥委員 저도 추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과 관련해서

○委員長 徐化錫 최동환간사님. 같이 질의하고 답변을 들도록 하죠.

○崔東煥委員 구청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뭐 우리 위원님들 굳이 이야기 안해도 알다시피 위원회만 옛날부터 꾸준히 많이 만들어 왔지만 실제로 가동되면서 도움이 되는 위원회는 거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94년도에 국제교류추진위원회를 또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회의를 한 두번 정도 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류추진위원회가 이번 북경 순의현과의 교류사업에서 구체적인 도움이 되었는지, 안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교류추진위원회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그 위원회를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해체를 하든지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94년도에 만들어진 국제교류추진위원회는 한시적인 그런 기구가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유명무실하다면 없애겠습니다. 없애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네, 윤홍노위원님.

○尹弘老委員 구체적인 자료는 국장님께서 추후 문서로 자료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견해에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제 도시간 우호교류협정체결 이후 몇년에 한번씩 상호 방문하는 정도라면 이것을 발전단계로 한번 불

것인지 아니면 우호하는 하나의 의의만 갖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내 도시와 농촌과의 자매결연으로 해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해서 상호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이 국제간 교류도 우리 관내 업체의 생산품중에 수출가능한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상품이 회사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한 현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국제우호교류 확정된 도시와의 수출을 증대 시킴으로 우리 지역발전이나 국익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가 국제도시간 우호교류사업은 물론 그런 말씀하신 우호적인 그런 의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양 도시가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단계를 밟아서 저희 성북구와 순의현이 발전하고 나아가서는 서울과 북경이 또는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업의 뜻이 있습니다. 그다음 국내 농촌과 자매결연을 해서 상호 도움을 주는 것처럼 저희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렇게 발전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관내 생산품을 수출할 수 있는 현황이 파악됐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되는데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이것은 올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徐化錫 여기까지만 듣고 답변을 마치죠. 어떻습니까?

(「위원장」하는 이 있음)

○崔東煥委員 답변을 듣고 제가 질의할 게 몇가지 있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최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어요?

○崔東煥委員 아니, 보충질의가 아니고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섹텍스 관련자료는 빠른 시일내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울시 사회복지 기초 수요조사표가 이게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아무런 여과 과정없이 각 통반으로 조

사서를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임시회를 앞두고 자료요구를 몇가지 했는데 구청에서는 그 중에 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재차 요구를 해가지고 부족하지만 다시 자료가 올라왔는데 다른 위원회와 달라서 행정위원회에 관련된 자료가 구청에서 지적한대로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어떤 단체의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통반장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료가 어떻게 보면 사생활을 공개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시각과는 다르게 그 이름을 내세운 사람들은 공민입니다. 공민이라면 기본적인 자기의 나이라든지 직업 그리고 주소, 전화번호 정도까지는 어느 단체든지 공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큰 권리인양 해서 거부를 한다는 자체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통반장 올해 들어서 위촉·해촉된 자의 현황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황자료는 오지 않고 표만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자료제출형태는 이전의 그것하고 전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작년도 정기회의때 자료요구한 것 많은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수박 겉핥기 식의 자료가 많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여러번 지적했지만 그때도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총무국장 이균우국장과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총무국장과 몇 과장들이 바뀌면서 또 이런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문제제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런 행태들이 정기회를 거치면서도 계속 나타날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지만 앞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 자료에 대한 충실성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상사전적인 의미에서 보통 위원님들이 작년도에도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보통 현황자료를 묶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김없이 표만 하나 달랑

보냅니다. 그런데 사전적인 의미에서도 현황과 현황표를 엄밀히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현황표는 그런 내용에 대한 어떤 도식화된 수치의 그런 문제이고 현황이다. 그러면 사전에서도 일이 되어가는 상태나 사항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항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이 시작과 끝 과정을 다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통반장 위촉과 해촉의 현황자료를 요구 했을 때는 몇월 며칠 어느 통장이 어떤 사유로 해촉되었으며 어떤 통장이 또 다시 위촉이 되었는지 그 통장 나이가 몇 살이고 주소가 어떻게 되고 전화번호,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만 하나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관계 담당과장께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이름과 몇 통장정도까지는 보낼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것은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까지 공개할 수 없다면 자료가 필요없다. 그렇게 했는데 주민등록번호와 나이를 빼놓고 자료가 다시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는 구청의 그런 이해들이 상당히 정확하지 못하고 감정적이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것이 결코 사생활침해가 아니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俞鎮武委員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계신다면 어떻게 처리됐는지 분명하게 해 주세요.

○尹晚九委員 최동환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와 있지 않은 질문사항도 나와 있습니다. 최동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저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委員長 徐化錫 윤만환위원님은 현재 오늘이 시간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해요.

○尹晚九委員 아니,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委員長 徐化錫 지난번에 구정질문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지 말고.

○尹晚九委員 최동환위원의 의견이 전부 맞습니다. 저도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똑같은 입장을 받아 왔습니다. 단 이런 것을 낼때 제가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모든 것을 질문했었는데 하나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 자료가 현재 제 캐비닛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동에까지 다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행정공개는 안된다, 사생활 침해다 이래가지고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서류를 제출할 때 주민등록번호 다 제출합니다. 그런데 왜 나이가 있는 주민등록번호는 안 가르켜 주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최동환위원님, 유진무위원님, 윤만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초조사표가 사생활침해가 있는데 여과없이 내려보내서 그렇게 했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두번 보고를 드려 말씀올렸습시다마는 시 분청에서 말하자면 규격화되어가지고 거기에 나온 것을 써 넣기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청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무슨 저희 구청에 맞게 또는 가감 이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이것은 당연히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질책을 받고 보니까 조금 생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만, 아까 제가 답변 올린대로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본청과 충분히 협의를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다시한번해서 우리 구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최위원님께서 행정정보공개조례와 관계해서 감정적이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가령 우리 구의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님, 다른 기관에서 이런 정보 요구를 받았을 때 똑같이 지금까지 취급을 했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어느 국회의원님이라고 해서 저희가 더 정확하게 해드리고 구의원님이라고 해서 더 저희들하고 가깝다고 그래서 이렇게 안해드리고 이런 것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절대 게재할 수가 없구요, 저희가 지금 그렇게 자료를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도 나와 있고, 무슨 조례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요. 저희가 이 법률과 조

례를 다시한번 상부기관에 질의를 한다든가 변호사 검토를 받아서 저희 의원님들이 요구하신 뜻에 될 수 있으면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행정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말하자면 행정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이렇게 거시기하도록 하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유진무위원께서 내용을 알고 있었느냐, 제가 결재를 해서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규정상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만환위원님 말씀도 아울러서 저희가 충분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최동환간사 보충질의 있습니까?

○崔東煥委員 예.

○委員長 徐化錫 간단히 해주세요.

○崔東煥委員 질의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지초 수요조사 표에 보면 나이, 성별, 이름만 빼고 모든 그 사람의 집안 내력에 대해서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집안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든지 자폐증, 심지어 중풍 걸린 사람 자녀들이 직업없이 떠돌아 다니지 않는가 그런 것 까지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예를 든것은 이런 식의 어떤 사생활 침해가 우려있는 이런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해오면서 시에서 요구했던 이유는 이것이 어떤 다른 불순한 목적이나 그런 것을 쓰지않고 서울시 복지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기 때문에 주민들이 아무 말없이 해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들이 자료요구하는 것도 의원들이 민원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항상 의원들에 대한 자료의 부실함을 질책하는 말에 대한 답변은 마치 민원인이란 답변 그 이상아닙니다.

의원들은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자료의 부실함에 대한 변명이 항상 마치 민원인이 이해당사자가 요구했을 때 하는 답변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명확하게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는지 국장께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지금 자료 제가 요구를 하고 담당직원 과장부터 직원까지 일관되게 사생활 침해 이야기를 하면서 해왔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는 여기서 그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법령에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아마 법률을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 제10조2항에 보면 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이 보호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의 화일이나 고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보호기관의 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화일을 고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구청에서는 어떤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는 개인정보라고 해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당연한 취지가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2항에 보면 다음 각1호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나면 아까처럼 우리가 자료요구를 했을 때 그 자료를 우리가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한 줘야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각 호에 보면 제1호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것입니다.

구청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제1호를 가지고 공개할 수 없다 이러지만 제2호에 보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것은 무슨 말이나면, 여기서 말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란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동시행령 제15조의 3의2항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보주체 그러니까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안내도 되지만 나머지는 다 줘야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의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호에 나타난 정보주체의 동의를 항상 전제로 두면서 자료요청을 거부해왔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또 있을 시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작년도 우리 정기의회때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통·반장 주민등록번호, 주소 뭐 직업까지도 다 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자료제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것이며, 만약에 이것이 구청측의 말마따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으로해서 법률에 위배된다고 했을 때 그당시 자료 제출한 그런 공무원들은 마땅히 처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徐化錫 답변해 주시겠어요?

○總務局長 白亨奭 예. 최위원님께서 두번 세번 이렇게 말씀해주신 취지를 아주 너무 너무 잘알겠습니다. 아주 저희 공무원행에 절대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법조문 저도 가지고 있고, 성북구 행정정보공개조례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 관계조문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관계조문들을 검토해서 개정하는 방안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대적으로 무슨 감정이나 이런 것은 개입되지 않고 똑같이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해왔는데요. 이 사회복지수요조사 전수문제에서 거기에는 모든 나이, 성별, 집안내력, 무슨 여러가지 경력이 다 나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조사가 되면은 통계법에 따라서 이것도 자료가 절대적으로 비밀보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자료 때문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보공개조례를 한번 충분히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만일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서라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崔東煥委員 제가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거론하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조례 이상의 법령의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조례에 보면 제출해야 될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이 요구했을 때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한다면 그 요구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1/3도 아마 제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조례를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규정된 공개정보라는 것은 일반 이해당사자, 이해관계에 있는 민원인 이런 사람에 한해서 공개할 수 있는 목록을 만든 것이지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이렇게 한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률에서 규정한 개인 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자료요구해서 매번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이 개인정보의 공개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가지고 번번히 자료 요구가 거부되어 왔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수차례 문제제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되어온 관계로 해가지고 이 참에 시정이 되지 않고서는 앞으로 우리 행정위원회 회의진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은가, 그런 우려를 느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자료 요구가 있어가지고, 가능한 범위내에서 의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보내주십사하는 그런 우려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예. 잘 알겠습니다. 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문제가 아마 위원님하고 저희 집행부측의 법률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합이 되겠는가 그것을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검토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전폭적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俞鎮武委員 질문 받아놓고 하시죠.

○委員長 徐化錫 이제는 거의다 질의가 나왔고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를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高允根委員 최동환위원에 대한 짚막하게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고운근위원님 그 동안에 발언이 없었으니까 한번 하세요.

○高允根委員 고운근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내에는 행정정보공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정보위원회가 그렇게 활동을 활발하게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최동환 동료위원의 이러한 문제는 어떤 법률과 조례를 떠난 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 활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 이러한 사안은 신속정확하게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는 안개최하는 원인이 어디가 있으며, 앞으로 이런 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 활성화한다 그러면 이런 일은 쉽게 풀어나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장께서는 이러한 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 성북구내의 발전적인 우리의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을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행정정보공개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高允根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이것으로 질의를 마칩시다. 더이상 질의 마칩죠?

○崔東煥委員 잠깐만요, 자꾸 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委員長 徐化錫 아니, 여기가 우리 최동환 위원 혼자 계속 발언자리가 아니고, 다른 동료위원도 발언권을 줘야죠. 계속하니까,

○崔東煥委員 아닙니다.

○委員長 徐化錫 지금 최동환위원 계속 반복된 질문이 몇번 나왔어요.

○崔東煥委員 반복한 것이 아니죠. 보충질의죠.

○委員長 徐化錫 보충질의인데 계속해서 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문제, 이번엔 사회복지 기초수요조사 문제는 계속 세번 네번씩 지금 현재 보충질의 했지 않습니까?

○崔東煥委員 예를 들어서 이것을 꼬집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물어볼려고 한 것이 아니고,

○委員長 徐化錫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

으로 해서 전체 서울시 조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답변이 세번 나왔습니다.

○崔東煥委員 이것을 추가할려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委員長 徐化錫 계속해서, 여기서 걸러가지고 성북구 자체에서만 어떤 기초조사를 어떤 서울시 기준을 무시한 것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崔東煥委員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자꾸해서, 발언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고, 반복되는 것을 좀 삼가해 달라는 얘기에요. 최동환의원 해보세요. 질의 하세요.

○崔東煥委員 우리가 올해 1, 2월은 흑한기라 해가지고 회의를 안했습니다. 3월달 들어서도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 형식이 다분히 형식적이었고 요식행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를 제대로 하는 게 처음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동안 쌓였던 궁금증이나 이런 걸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것인데 위원장께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자꾸 끊으려고 하시는 것은 상당히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위원회에서 위원이 발언하는 것은 동일의제에서 발언시간이나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그러면 회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께서 같은 의제에 대해서 한사람이 몇 분 발언하자 아니면 몇 분 내로 발언하자 이렇게 명시를 주셔야지 그런 회의규정에도 없는 것을 가지고 제가 반복질의를 답변이 제대로 안나왔기 때문에 한 것인데 그런 걸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金壽榮委員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알맹이가 변종만 울리면서 자꾸 그런 것 같은데 우선 좀 시원하도록 10분간 정회,

○委員長 徐化錫 아니, 여기서 총무국소관 업무를 아주 질의를 받고 끝내기를 바래서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자체는 끝내고 싶어서 그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구청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0分 停會)

(16時00分 續開)

2. 서울特別市城北區行政區域區間調定意見聽取案 (城北區廳長 提出)

○委員長 徐化錫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 행정구역구간조정건의청취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성북구청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성북구와 노원구의 구간 경계조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鎮永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구역 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무위원님.

○俞鎮武委員 지금 이 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북구와 노원구와 강북구간에 톱날모양으로 지그재그로 오고가는 게 많은데 노원구와 성북구와의 문제를 이거 한 건으로 끝납니까?

○總務局長 白亨奭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俞鎮武委員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예, 안결용위원님.

○安傑瑯委員 안결용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말씀을 잘 들어서 본위원은 절대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 여건에 '91년 6월 27일, '94년 4월 21일 성북구에서 노원구로 경계조정요청을 하였던 바 노원구에서는 반대를 했던 이런 사안들이 현재 성북구와 노원구 경계조정 대상지역 도면 1안, 2안, 3안 내용애기가 이제 절대적으로 조정이 진작 되었어야 할 일이었는데 이제 어떤 이해관계, 자치구가 돼서 노원구에서 반대해가지고 그게 현재까지 안됐다는 이런 사안을 뒤늦게라도 이렇게 요청이 있어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지금 조정건의청취를 하겠다고 올라온 사안에 대해서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깊이있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2안대로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3안과 1안이 지금 도면에 돼있는데 이 사안을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3안내용대로 일부수정을 하면서 구정질문을 통배가지고 우리 성북구청에 이런 것은 진작 서울시에 상의해서 처리, 조정되었어야 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노원구에 요청을 해 가지고 노원구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지금 안됐다는 말씀을,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는 노원구에서 어떤 지역 주민들의 불편, 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성북구에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도 이 요청을 받았을 때 정말로 명실상부한 성북구민의 이익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 대국적인 견지에서 서울시 도시계획 전반에 관한 전지역 시민의 불편사항을 이 차제에 헤아리셔서 좀 더욱 깊이 있게 의견조정검토해서 가지고 확정지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본위원의 소견의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의 견해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3항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안대로 여기에 내용이 잘못 되었어요. 태능가는 화랑로를 중심으로 해서 3안 편입받는 지역을 우리 성북구로 하고 그 다음에 성북구 민방위 교육장을 우리 성북구로 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조정이 되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인지 지금 얘기하는 노원구 403번지만 노원구로 보내주고 이 3안 경계조정 대상 도면대로 참고해서 하실 수 없는 것

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金壽榮委員 일괄해서 질의하는 것이죠.

○委員長 徐化錫 김수영위원님.

○金壽榮委員 앞뒤가 바뀐 것 같습니다. 김수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지역 구간경계조정추진현황에 '91년도와 '94년도 두차례에 우리 성북구 측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두차례 다 노원구의 반대로 안되었습니다. 안된 원인을 밝혀 주시고 왜 안되었는가를 밝혀주시고 이번에 사안이 다른 것 같은데 그러나 두차례에 걸친 반대이유를 근거로 해서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토의사항중에서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이미 안결용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저도 거기에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미리 밝혀 두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안결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저는 약간에 수정을 보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도면 2안을 참고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2안은 화랑로를 경계로 해서 그냥 일직선으로 똑 자르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석관동 403번지는 자연적으로 노원구로 넘어갑니다. 2안에다가 도면 3을 봐 주시죠.

도면 3에 그러니까 2안에 3안을 추가하는 것으로 부분적으로 그것은 어디인가하면은 현재 좌측에 흑색으로 잔뜩 표시되어 있는 지역, 그러니까 우남 아파트지역일대를 어디입니까? 우이천 경계로 잘라놓는 것이 합리적일 아닐까, 그러니까 현재 2안 플러스 3안에 우남아파트 지역을 편입대상으로 넣는 것, 이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시고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구청측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다른 위원님, 윤홍노위원님.

○尹弘老委員 지금 행정구역 구간 경계조정에 따른 대상지역이 '91년6월, '94년4월, 두차례에 걸쳐 우리 성북구에서 조정안을 냈으나 노원구에서 반대한데 대해서 방금 김수영위원님께서 사유가 무엇이나고 물었습니다만은 당초 여기서 경계 조정하고자 한 구역의 한계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 2,

3항에 도면상에 표시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경계조정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전혀 여기에는 관계가 없는지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구청 당국에서는 노원구의 요청안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서는 1, 2, 3항을 놓고 2안이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만은 관심없이 지나다보면은 여기가 성북구인지 노원구인지 실제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다가 도면으로 나와있는 것만 가지고는 하천의 경계가 어디고 도로의 경계가 어디냐 하는 것이 확실하게 심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5,000분의 1지도를 놓고 하천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고 또 현재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고 하는 도면은 여기다가 하나 갖다놓고 설명을 하심으로 이해도를 높였으면하는 생각입니다. 또 지금 현재 3안중에 나와 있는 우리 민방위 교육장등이 노원구로 편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 안이 여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천과 도로 경계에 따라서 구의 주민생활편의라든지 지역의 편의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1, 2, 3안 이렇게 간단히 지나가는 식으로 설명을 해서는 이해도가 약하고 지금 여기 민방위 교육장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방위 교육장도 우리 성북구 관할보다는 노원구 관할이 노원구에서는 도로를 하나 건너야 하는 문제가 있고 성북에서는 하천을 경계로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장이 성북구의 관할로 함으로써 득실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도면은 하나 갖다 놓고 설명을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도면가지고 온 것 없습니까? 가지고 왔습니까?

○總務課長 李鍾淳 아직 안가져왔습니다. 총무과장이 안결용위원님과 김수영위원님, 윤홍노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도면은 저희가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 연락을 해 가지고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올라와서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91년6월27일하고 '94년4월20일날 경계조정을 요청했던 것은 '91년도에는 현재 도면에 나와있는 3안을 가지고 경계조정을 하자해 가지고 요청을 했었는데 노원구에서 반대의견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 폭을 좁혀 가지고 2안으로 했었는데도 그때 당시에는 노원구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하게 된 그 원인은 지금 3안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석계역 앞에 그 동안에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어 가지고 상업지역으로 해서 빌딩이라든지 이런 건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섰고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고 그 옛날에는 우이천이 하천이 있어 가지고 경계가 명확했습니다만은 하천이 복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경계가 현재는 노원에서 쓰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는 하천이었으니까 하천을 하나 건너야 되어서 쓰는데도 불편이 많았습니다만은 현재는 하천복개를 하다 보니까 노원구에서 건너다니는데도 불편이 많고 지금 그 빌딩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노원구에서 구 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 성북구로 넘겨주기는 아까운 땅이다 해가지고 노원구에서 반대를 했었습니다. 전에 했을 때에는, 그래서 저희가 두번째로 지금 2안에 대해서도 한번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로는 그 노원구 월계동, 그러니까 재개발이 안된 상태고 그 시영아파트가 그대로 있는데에서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노원구에서는 전혀 불편한 사항이 없었고 현재 저희가 편입받고자하는 지역에 노원구에서 유료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현재 주차장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로는 환승 주차장 수입만 고려했고 지금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그 아파트 지역에는 사는데라든지 활용하는데에 전혀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것을 반대를 했었는데 이것을 재건축을 할려고 하고 보니까 이 지적이 안맞아서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역으로 지금 노원구에서 우리구로 의견청취가 왔습니다. 청취가 와서 저희가 노원구 실무자들하고 한번 어떻게 했으면은 좋겠느냐하고 논의를 한번 해 봤더니 노원구 실무자들의 얘기로는 지금 1안처럼 자기들 땅만 주었으면은 가장 좋은

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2안으로 해 가지고 우리도 그냥 줄 수는 없고 최소한도 2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애당초는 저희가 맨 처음에는 3안으로 얘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도 노원구 직원 얘기입니다. 구 직원의 얘기도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러면은 2안 정도 해 보면은 어떻겠느냐 했더니 노원구 측에서 그것은 한번 의회에 올려서 자기들도 의견청취를 해서 검토를 받아 보겠다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상태로 봐서는 3안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청했을 경우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어려울 것 같고 2안 정도는 자기들이 지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金壽榮委員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안결용위원님도 조금 말씀하셨고 저도 그랬는데 나는 2안 플러스 3안 그랬거든요. 사실은 이해관계에 상관이 없다면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2안 플러스 3안에서 현재 2안이 상당히 합리적인데 2안에다가 현재 우남아파트 지역을 성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을 되든 안되든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은 긴 안목으로 봐서 사실 우남아파트가 여기는 당연히 성북지역으로 와야 될 지역입니다. 세외 수입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의 대상, 안되더라도 문제는 뭐냐하면은 현재 대두된 사항은 석관동 403번지 때문에 문제가 대두되었지만은 이 기회에 성북구에서 우리가 두번씩이나 요청을 해서 이제 거론되었던 것이 저쪽에서 반대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저쪽의 안도 수용을 하면서 성북구의 의지도 표현해 놓는 것이 지금 당장 안되도 긴안목으로 봐서 정말 역사 의식을 갖고 성북구에서 제안했다는 이야기가 나올겁니다. 그러니까 노원구의회의 의원들 수준도 알겠, 이번에 한번 안을 절충해서 넣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답변좀 해 주세요.

○總務課長 李鍾淳 지금 노원구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노원구로 갈 민방위 교육장이 있는 부분은 사실상 사유지가 거의 없어

가지고 구 제정에 거의 도움이 되지않는 지역입니다. 그렇고 지금 우남아파트 지역은 앞으로 더욱 발전 가능성도 있고 현재도 상당한 재정수입이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가지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3안을 해가지고 노원구의회에 의견제시를 해도 좋다고 그러시면 저희로서는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보기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2안도 사실 어렵지 않겠느냐 오히려,

○安傑瑤委員 총무과장님 답변중에 본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린다고 보면 이 의견조정 청취건에 대해서는 자치구간의 어떠한 실과 득을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따질 것이 아니라 나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서울시 전체 국가장래에 전 국민, 전 시민의 입장에서 서 냉정하고 냉혹하게 판단을 해서 나는 경제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좀 힘이들고 어렵다고 보면 이 화랑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북구로 편입시키고 그 나머지 화랑로 고가도로를 넘어서서 민방위 교육장이나 아파트인접지역 403번지는 노원구로 가는 게 원칙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우리 성북구에서 원안, 원칙이 있으면 이 정도로 가는 사무 행정을 가지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지 노원구에 우리가 협의를 했다고 두번씩 반대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만 이 협의조정 온 걸 우리는 그대로 처리해 줘야 할 사항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3안 안에 제 본인의 건물이 하나 있어서 얘기가 아니라 이 지역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성북으로 올 수 있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전체 민원수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동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지역적인 여건상으로 봐서 한 4m도로, 3m도로, 2m도로가 노원구와 성북구의 경계지역입니다. 지금 실질적인 현 사항이 거기에 노원구청 청소차수하차가 지나가고 오물침수물 다 흘러가지, 성북구 청소차가 지나가고 그 좁은 도로에 양 구간에 행정의 업무처리 민원 말하자면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나하

는 이 생각을 지금 말씀을 올리니 이것 널리 헤아리셔서 노원구의회나 또 노원구청에 사무보는 관계 공무원들께 이런 사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가 가도록 설명 말씀하셔서 이렇게 조정함이 타당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간곡한 청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壽榮委員 위원장님 이거 아무래도 청취안이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통과가능예상을 전제로 하고서 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순수한 의미에서 얘기를 해보니까 안결용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에서 반대 여부관계없이 여기서 안을 냈던 것이니까 또 3차 반대하는 안이 있어도 우리는 정도를 간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이해관계가 이유가 아니에요. 주민을 담보로 하고 정말 이해득실을 따진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가혹한 일입니다. 지금 안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청소문제 하나만해도 그렇고 아주 대단해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委員長 徐化錫 네, 최계락위원님.

○崔桂洛委員 최계락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혹시 '91년도, '94년도에 아마 그때 당시 주민 찬반투표를 했을 거예요. 여기가 제 지역이기에 잘 아는데 그 당시에 저희가 몇번 넣고 시에도 들어갔다 왔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해서 그게 안 온 겁니다. 그 당시에 찬반투표에 대한 것 한 것 있어요?

○總務局長 白亨奭 그 당시에 주민이 반대하는 것으로 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崔桂洛委員 몇 %인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안결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3m, 4m는 안 될겁니다. 그런 좁은 도로에 어떻게 구간경계가 골목으로 쪼개졌는지 이해가 안가요. 대로로해서 하천으로 쪼개지든가 큰 대로로 쪼개져야지. 동경계 구간도 아니고 구간경계를 자기네들의 어떤 득을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 먼저번에 우리 성북구에서 그만큼 먼저 타진했을 때 일부로 안 넣어 줬습니다. 이번에도 노원구에다 우리 구에서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명분을 확실히 찾아가지고 해 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위원님들 말씀 잘 알겠

습니다. 이 안은 어디까지나 노원구에서 본 안을 타당여부를 위원님들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金壽榮委員 저쪽에서 이런 정도면 우리도 한 번 해보겠다는 이번에는 긍정적인 표시가 온 것 같은데 그럼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답변이 있을 수도 있고, 좋다 그런데 우리 안도 이러니까 이렇다 하는 것을 저쪽에 의견을 개진시키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우리 김수영위원님 말씀대로 성북구의지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반영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을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겠습니다.

○崔桂洛委員 먼저번에도 실제로 도봉구에 있던 땅 번3동이 우리 성북구 장위3동으로 편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같이 들어갔던 거라고 이제. 같이 들어갔다 그것만 성북구 번3동이 장위3동으로 편입이 된 것이고 여기는 주민이 투표해서 반대를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못 온 지역인데 이제 역으로 노원구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찾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도봉구 구간 경계도 그게 저희 동네에요. 화장실은 성북구고 안방은 도봉구인 이런 경계구간이었습니다. 거기가 그러다 거기를 드림랜드 앞길로 해서 쪼개가지고 왔는데 그게 구간경계가 맞지 지금 여기도 똑같은 경우라고요. 우리 성북구청 측에서도 노원구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얘기거리가 됩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委員長 徐化錫 네, 유진무위원님.

○俞鎮武委員 아까 안결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찬성을 하면서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질문한 이유가 톱날마냥 된 데가 없나니까,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현실로 나와 있는 거예요. 국장님은 아까 없다고 했다고.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까 있다고 물었는데 없다고 하더니 지금 이런 문제를 놓고 토의를 하게 됐는데 그 철길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고 철길 너머는 저쪽으로 주는

게 우리 눈으로 봐도 그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또 토론을 하 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 이해득실만을 놓고 따질게 아니고 이쪽에는 지금 보니까 개인아파트를 짓다보니까 걸림돌이 생긴거야 내가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쥐고 넘어와서 공무원들 흔들고 앉아 있어. 공무원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너희 가져갈 것 가져가고 우리가 가져올 것 가져와라. 이렇게 하고 정 입장 곤란하다면 서울시에다 너희들 볼 때는 어떠냐 우리는 이런데 우리 주장을 거기다 담아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아까 유진무위원님 제가 말씀을 못 알아 들었습니다. 저는 아까 이 구간 말고 다른 구간의 것이 또 올라온 것이 있느냐 저는 이렇게 알았고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徐化錫 네, 최계락위원님.

○崔桂洛委員 총무국장님께 한가지만 더 여쭙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동간 경계구간 조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總務局長 白亨奭 그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공문으로 기안을 해서 오늘 시행을 했습니다.

○崔桂洛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각동에 위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동간 경계도 아주 잘못 되어 있어요. 골목골목 지면을 막 잘라가지고 우리 지역만 해도 도로가 있고 대로가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잘라 주고 해줘야지 우리 장위 1, 2, 3동만 해도 인구가 벌써 3만단위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동간 경계를 잘라놓은 것이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떤 지역은 가 보면 여기가 장위 3동인지, 2동인지 구분이 안가요. 저희들도 헛갈려 거기에 가보면 그리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각동이 인구가 3만이 되나, 6,000이 되나 9,000이 되나 동직원들은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기회에 인구가 많은 지역 동사무소를 그만큼 업무가 많으니까 동직원이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그만큼 할 일이 적으니까 거

기는 또 거기에 맞게끔 조정을 해 줘야지 3만이 되었던 9,000이 되었던 6,000이 되었던 어떻게 동직원 수는 다 똑같나 이런 얘기죠.

○總務局長 白亨奭 알겠습니다.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박시준위원장

○朴時俊委員長 지금 1만, 2만, 3만까지를 봤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경계 조정이라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 나름대로 이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아는데 나름대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가지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과 동 관계 경계 조정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이런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동의 이런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이 1, 2, 3안까지 들어온 내용으로 봐서는 2안이 굉장히 적합합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화랑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걸 딱 자른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셔서 우남 이쪽도 이렇게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 얘기 청취를 다 듣다보면 구간 경계 조정 이것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제 나름대로 구청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사를 또 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쪽 부분은 이쪽으로 들어와야지 좋은데 이쪽 부분은 이쪽으로 나가야 좋은데 이것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적에 이렇게 자르는 것이 교통상에도 좋고 행정관리하는데도 이게 합리성이 있다 하게 되면 이게 구간경계 조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 안에 어떤 재정자립도라든지 인구가 많이 넘어가고 적게 들어오는 것 좋고 나쁜 것 따지고들면 이 구간 조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안 내용대로 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수합을 하셔가지고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잘 좀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

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알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다른 위원님, 윤홍노위원님
○尹弘老委員 지금 구간 경계 조정에 따라서 말씀을 저도 듣고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남아파트로 표시된 지역이 지금 노원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간 경계가 도로가 협소해서 청소 등 여러가지 생활 편의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 나왔고 또 하나는 반대로 그 지역 주민들은 구간 경계 조정에서 노원구에서 성북구로 편입되는 것을 찬반 투표에서 반대자가 더 많았다 이것은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구간을 조정한다는 의미와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을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성북구로 편입을 하자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또 실지 위원님 말씀 중에는 여기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성북구로 편입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과연 어느 것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찬반 토론에서 판단이 잘못 돼서 현재로는 주민들도 원하고 있는지 그 문제점이 의문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總務課長 李鍾淳 총무과장이 윤홍노위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때 전에 구간 조정을 했을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청취했는데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그건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 노원구청 관할로 되어있고 통반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체가 노원구청에서 임명을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보다는 그런 분들의 영향이 지난 번에도 제가 몇대 몇으로 부결됐는지를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듣기로는 통반장들이 선동하다시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는 성북으로 가면 더 불리하다 노원에 남아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안이 부결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지금 그 지역을 지나다니다보면 그때 당시 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빌딩도 많이 생기고 인근에 상업지역도 많이 생기고 해서 현재상태에서 주민들 의사를 물었을 때 지난번 보다는 훨씬 유리하

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崔桂洛委員 그것 원래가 성북구 아니에요?

(「위원장」 하는 이 있음)

○尹弘老委員 그러면 성북구보다 노원구 행정관할 구역내에 살아야 여러가지 유익한 점이 있다고 주민들이 생각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安傑瑢委員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노원구 1개 통 월계1동의 27통에서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을 내가 매일 선교하다시피 내가 잘 아는 분이고, 그 지역에는 저하고 또 인간관계가 인맥들이,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 제가 참고로 해서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1차 우리가 구간 경계조정을 요청했을 때에 주민 찬반투표를 했다는 말씀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내 건물에 들어있는 세대가 그때 8세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 주거는 아니지만 내가 세입자를 또 제가 어떤 그 지역에 대상 건물이 있어서 얘기가 아니라 나는 노원구와 성북구 어떤 개인사유 재산권상에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자는 얘기를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실지 국가 민족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 본다는 국가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이것이 어떤 이해의 득실을 논하고 따져서 된다 안된다 하는 이런 명분론이라고 하면 이 말이 너무 소인배 족속들 처럼 말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런 명분을 떠나서 누가 봐도 제3자 객관적인 입장에서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이 지역은 과연 성북구로 가야 할 것이냐, 노원구로 가야 할 것이냐 이런 명분을 갖다 놓고 노원구간에 조정이 안됐을 때는 아까 말씀 그대로 서울시에 조정 협의회를 거쳐서 결정짓는 것이 타당하지 어떠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물어서 찬반투표해서 이런 식의 행정 절차를 밟는 것이 나는 모순이 있다고 보고, 실지 전에도 그런 말씀으로 사무처리가 됐다고 답변들을 하시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게 안됐다 하는 내 증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사실관계를 내가 알고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참고 하셔서 이렇게 구간경계조정에 효과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잘 아시겠지만, 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양 구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면 지방의회 의건을 수렴을 하고 시에 올려서 시의 검토를 받아서 법제처 심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상정을 해서 대통령 재가를 얻어서 공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꼭 지금 2안이 타당하다고 제안설명을 드렸습시다만, 위원님들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 의견대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壽榮委員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예. 김수영위원님.

○金壽榮委員 김수영위원입니다. 지금 논의하시는 문제들이 저도 우를 좀 범했고, 아차하고 넘어간 사항인데, 지금 질의하는 시간인지 토의시간인지 지금 전부 짬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흘러간 것을 어쩔 수가 없고, 위원장께서 조정을

○委員長 徐化錫 질의시간이예요.

○金壽榮委員 질의시간이예요? 그런데 지금 질의시간에 토론도 되고 뭐도 되고 막 돼 버려가지고 이제 그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그런데, 위원장께서 조정해 주시리라고 믿고 본 위원은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으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委員長 徐化錫 됐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고운균위원님.

○高允根委員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마치고 토론으로 들어가자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있고 또 내 안이 있는데, 이것 좀 한가지만 물어보고싶는데 위원장님한테 이것을 재가를 받는다고 그러면

○委員長 徐化錫 방금 또 일단 토론을 하자고

○高允根委員 토론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면서 짚막하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그렇게 합시다.

○高允根委員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사를 문의하고 서로 동료의원간도 노원구의회간 이런 절충안을 낸다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쉽게 해결하려면 엄청나게 쉽고, 어려울려면 굉장히 어렵게 부딪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총무국장께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행정구역의 조정하는 정부산하의 어떤 기관단체나 이런 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안결용위원님 말대로 주민을 담보 잡는다든가 세수의 이해관계에서 양쪽의 과정으로서는 아주 어려운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정부산하기관단체가 있는지 또 이런 것을 우리 양 노원구나 성북구의 의원의 입법으로 조례개정 청취안인데, 이러한 과정을 주민들이 세불리기를 해서 예를 든다고 하면 노원구, 성북구 해가지고 어떤 주민 투표로 하면 어떤 이해에 따라서 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공청회를 해서 그 양쪽이 이해가 잘 갈수 있는 이런 기회를 삼아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의 기초에서도 공청회를 한번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물어보고 일단 토론에서는 안결용위원님 토론으로써는 나는 그것을 찬성합니다.

○委員長 徐化錫 우리 고윤근위원님은 3안,
○高允根委員 3안이 아니고,
○委員長 徐化錫 일단 질의도 하고 3안에 찬성합니까?

○高允根委員 아니죠. 질의도 하고 우리 안결용위원이 전자에 말씀하는 먼 훗날에 우리 후손들이 볼 때도 과연 잘했다는 이런 말을,

○委員長 徐化錫 그것이 3안이죠.

○高允根委員 예.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徐化錫 송하성위원님.

○宋夏星委員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일로 해주는 것이 옳고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도 좋은 안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목적이 달성된다거나 우리 안대로 결정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따지면 지금까지 1안, 3안 중에서 우리 성북구에 유익한대로 우선 올려서 그것이 통과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옳고 이것가지고 우리가 여러시간 허비할 필요성이 없겠네요.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徐化錫 됐습니까? 그러면 최계락위원님.

○崔桂洛委員 최계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 지역은 안결용위원님이나 김수영위원님이나 본위원이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우리 성북구의회 의견청취수렴이죠?

○總務局長 白亨奭 예. 그렇습니다.

○崔桂洛委員 그러면 우리 성북구 의회에서 그 지역에 있는 우리 현 의원들이 봤을 때는 3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에서는 제3안을 채택을 해서 해주시고, 이것 가지고 질질 끌 필요도 없고 의견청취니까 우리 성북구에서는 3안으로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그런데 의견청취가 앞으로 경계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단순히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만 청취하는 것 아니죠. 이 의견이 결정이 되면 앞으로 해서 경계조정하는데 실현가능성 있는 것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는데, 우선 실현 가능성으로 본다면 2안이 가장 빠른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실현가능성으로 본다면, 아까 조금전에 송하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북구에 도움이 되는 일 이익이 되는 것으로 한다면 노원구도 자기 구에서 이익이 되는 것이 뭔가를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더 어려운 상황이 나오지않을까. 제3안을 가지고 논한다면, 그런 생각을 저도 한번 해봅니다.

또 여러 위원님 다른 토론힬실 위원님. 김수영위원님.

○金壽榮委員 제가 아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자고 한 것은 할 얘기를 다

하지 말고 그냥 빨리 넘어가자는 뜻이 아니라 이 안건의 처리를 깊이하게 하기위해서 제가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제가, 토론시간이죠?

○委員長 徐化錫 예.

○金壽榮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구청측에서 안을 내놓은 것이 1안, 2안, 3안이 있고, 그다음에 전원 2안 플러스 3안의 절충형을 얘기를 했고, 그러면 4가지안이 나온 겁니다. 이따 위원장님께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것이 표결을 해야될 사항인지 뭔지는 몰라도 1, 2, 3 그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론시간인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지난번 노원구의회에서 저희들이 91, 94년도에 노원구의 반대에 의해서 이것이 무산됐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또 그렇게 안되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안이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너무 아전인수격이라 잘못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高允根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득실관계때문에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질의가 아니고 토론시간이라 말씀드리는데, 예를들어서 정그렇다면 노원이 1, 2, 3안 더하기 수정안 이것 중에 어느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서 우리 성북구 의회의 안으로써 하나의 상대구에 대해서 이쪽 안을 제시하실 기본자료가 되겠죠. 그것 말고 여론 청취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노원구 산하에 행정기관 관할 내에 있는 주민들 상대로 여론 청취한다는 것은 어찌보면 아전인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원구에서 정말로 주민의 권익을 염두에 두신다면 성북구하고 노원구측하고 공동출자를 해서 제3의 여론 청취기관에 공정하게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안이 규정이나 법에 위배가 되겠나요? 안되겠나요? 그것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高允根委員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한 것 공청회하고 또 한가지가 우리 이 과정을 조정하는 행정청이나 정부산하 어떤 우리가 공식단체가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운근위원님 말씀이 조정기관 단체가 있느냐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조정기관 단체

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시로 올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시가 그런 조정기능을 하지않을까 이런 생각은 같습니다. 그다음 양 구 의견을 공청회같은 기회를 통해서 얻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법적으로는 공청회보다는 의회 의견이 전적으로 100% 양 구 의견입니다. 공청회보다는

(「위원장」하는 이 있음)

○金壽榮委員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지금 고운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시죠?

○總務局長 白亨奭 그 답변 드리면서 우리 김수영위원님도 양구에서 공동출자를 해서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조사기관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무슨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金壽榮委員 아니, 그러니까 합의한다면 규정이나 법에 위배될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總務局長 白亨奭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제3의 기관에서 용역을 받아서 여론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구의회는 전체 구민의 대의기관이고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구의회 의견수렴이 제 생각에는 훨씬 위에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金壽榮委員 그 말씀이 아니라, 성북구의안을 노원구에 제시를 했을 때 노원구측에서 우리 성북구안이 입맛에 맞으면 O.K. 그럴거예요.

입맛에 안맞는다면 그쪽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달겠죠.

우선 구의회에서 그것은 안된다고 반대하는 방안도 있고, 그러면 너희 일방적으로 반대하냐, 주민여론 들어보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들어보자, 주민투표 해보자, 그러면 보나마나 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쪽에서 대안을 너희 그러면 일방적으로 그러지 말고 너희쪽에 다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민의 순수한 의견 들어보자, 했을 경우에 국장님께서 그 안을 제시해서 저쪽에 설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하면 한번 그런 안도 좀 가지고 추진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總務局長 白亨奭 용의가 있습니다.

○金壽榮委員 그러면 됐습니다.

○俞鎮武委員 위원장님, 지금 위원님들도 자꾸 자리를 뜨고 지루한 것 같은데 저는 고운근위원님 동의안에 찬성을 하면서 노원구나 성북구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안결용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의적인 면에서 공평타당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장해야지 우리의 이득만 있다고 우리의 주장만 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운근위원님 3번 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金壽榮委員 위원장님, 토론을 종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徐化錫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김수영위원님은 2안 플러스 3안입니까?

○金壽榮委員 그러니까 1, 2, 3안이 나왔죠? 1, 2, 3안에다가 4안이라고 붙이기는 싫고 1, 2, 3에 2안, 3안의 수정안,

(「그것은 말이 안되지, 4안이지」하는 이 있음)

그게 아니라구요, 구청에서 안 내놓은 것은 3가지 안이니까 4안이라는 건 여기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2안과 3안의 절충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붙이든 관계없어요.

총무국장님 이해하신거죠, 제 말씀?

○總務局長 白亨奭 예, 알았습니다.

○高允根委員 참고적으로 총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정에서 구의회가 아주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이상 더 좋은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이 사안은 노원구의회와 우리 구의회와의 이해관계가 도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3의 절충을 해서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아주 먼 훗날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행정구역 조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참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委員長 徐化錫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어떻게 거수로 하죠?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유인물을 보시고 도면을 보셔서 아시겠습니까마는 제1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은 403번지만 성북구에서 떼어 주는거죠. 석관동 403번지만

을 노원구로 편입시켜준다 그것이 제1안입니다. 없죠? 그러면 제1안이 없기 때문에 제2안으로 넘어갑니다.

제2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

박시준위원님 한 분, 그것은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식으로 우리가 주고받자 그런 내용이에요.

또 제3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

7분, 김수영위원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

그러면 제3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7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안입니다.

○議事係長 洪德憲 재석위원이 11분인데 손드신 분이 10분입니다.

○俞鎮武委員 1명은 안했습니까?

○議事係長 洪德憲 예.

○委員長 徐化錫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金壽榮委員 아니, 민방위교육장 주자는 얘gie요?

왜 줍니까? 그 좋은 땅을 확실히들 하자구요.

○委員長 徐化錫 일단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제3안에 7분 위원님이 거수를 해주셔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위원장」하는 이 있음)

긴급동의입니까?

○金壽榮委員 예, 긴급동의입니다.

절충안으로 제시한 제4안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표결을 원합니다.

○委員長 徐化錫 이미 표결이 거수로 끝났는데,

○金壽榮委員 아니, 발표하지 않으셨으니까.

○委員長 徐化錫 일단 거수해서 끝난 사항을 다시,

○金壽榮委員 아니, 제가 철회하면 사항이 달라져요.

○委員長 徐化錫 어떻게 달라집니까?

○金壽榮委員 그렇게 되면 저는 구청측에서

제시한 제2안을 찬성하려고 그러는거예요.

○委員長 徐化錫 김수영의원께서 2안을 찬성한다 하더라도 과반수가 안되고, 해당 없습니다. 이것이 서울시까지 가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安傑瑤委員 위원장님,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의회에서 의견조정 청취 의견을 이런 방법으로 서로 얘기가 되면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본위원의 생각은 솔직한 말로 안되는 것 보다는 이렇게 1안이라도 그렇게 주는 게 원칙이고 또 1안보다는 2안이 되는 게 원칙이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3안이라도 해서 돼야하는 게 원칙이 아니냐 하는 선에서 말씀이 있으셨고, 3안이 안됐을 때 아까 김수영의원께서 그런 조정방법이라도 해서 하자는 이런 대안적인 얘기가 결과론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뻔한 수치얘기입니다. 솔직히 이게 가면 안되는 사항인데 우리 성북구의회에서는 대세의 여론이나 전 위원님들의 여론이 3안 정도라도 돼야 가능할 것 같다, 그게 원칙이 아니냐 하는 선에서 그게 의견조정이 된거니까 그렇게 집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徐化錫 일단 표결 결과 7분이 제3안을 찬성했기 때문에 제3안을 본 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03分 停會)

(17時20分 續開)

3. '96년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審査の件

(總務局 所管)(城北區廳長 提出)

(17時20分)

○委員長 徐化錫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총무국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끝에 실음)

당초 편성된 예산대로 각종 사안 및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지원에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오니 제반사항중에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오니 검토해 주시고 통과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확히 사용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徐化錫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鎮永 네, '9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委員長 徐化錫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고 내일은 재무국과 3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을 먼저 심사하고 다음 세출 부분을 심사하되 토론 및 계수조정은 9월 13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 전체를 일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총무국 세입·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하겠으니 페이지와 예산과목을 확인하시어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6년도 추가경정예산서 22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되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3페이지 맨 밑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죠?

(「네」하는 이 있음)

25페이지 보세요. 조정교부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보

졌습니다. 일반회계 7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76페이지 다음은 78페이지로

(「잠깐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崔東煥委員 인터넷 구축관련해가지고 물어볼 게 있어서 지금 구청사 내에서만 구축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동사무소까지 가능한가요?

○企劃豫算課長 宋政宰 현재 여기에 올라온 것은 구청사만 가능한대로 지금현재 동사무소는 P.C통신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P.C통신이 다 깔리면 동사무소도 가능합니다. 그때 동사무소는 돈이 안 들어가도 가능합니다.

○崔東煥委員 의회사무국은 예외로,

○企劃豫算課長 宋政宰 아니, 마찬가지로 깔립니다. 보건소하고 구의회사무국하고 구청하고 일단,

○俞鎮武委員 여기에 우리 보시다시피 손으로 지금 수기를 하는데 컴퓨터로 이렇게 하는 여기 장비 포함된 거예요?

○企劃豫算課長 宋政宰 그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이고요. 물론 속기 컴퓨터는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東煥委員 지금 통신망에 보면 성북구청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회횟수라든지 그렇게 자료로 계속 보관하고 있나요? 아니면,

○企劃豫算課長 宋政宰 그것은 민원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끔 들어가 보면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회답이 전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관리도 현재 민원담당관실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振權委員 제가 좀 여쭙볼게요.

○委員長 徐化錫 네, 김진권위원님

○金振權委員 지금 최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비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62면이고 인터넷 연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해가지고 30개인데 이것이 30개라는 숫자 총 62면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企劃豫算課長 宋政宰 김진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프트웨어 연결프로그램이라는 것이 30개는 어떻게 나왔나하면 저희 구청에 27개 실과하고 그다음에 구의회하고 보건소는 하나씩만

들어가면 전부 깔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밑에 보면 라우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다중연결장치라고 해가지고 여러가지 한선만 있으면 다른 컴퓨터에서 연결이 가능하합니다. 그래서 구의회하고 저쪽 보건소는 하나씩만 있으면 되고,

○金振權委員 제가 여쭙보는 얘기는 구청에서 하나만 놓으면 단말기 여러개 놓으면 쓸 수 있지 않느냐 나는 지금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건소하고 구의회에 한 개씩만 깔면 지금 얘기가 단말기를 놓고 여러개 쓸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구청에도 이거 마찬가지로 아니냐 이거지.

○企劃豫算課長 宋政宰제가 자세한 전산지식은 솔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과별로 들어가야 되고 27개 실과에다 전산실도 또 하나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구청이 28개, 구의회 하나, 보건소 하나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金振權委員 알았습니다.

○企劃豫算課長 宋政宰 그 다음에 홈페이지 62면은 현재 중구하고 강북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여러가지 65면도 있고 58면도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대충 짜 보니까 한 평균잡아서 62면 정도면 우리가 여러가지 교통이라든가 행정, 문화, 성북에 관한 것은 실을 수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가지고 62면을 잡게 되었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비교 검토해서 잡았습니다.

○金振權委員 그게 나중에 모자라지 않을까요?

○企劃豫算課長 宋政宰 타구도 지금 현재, 그런데 홈페이지라는 것은 자꾸 자꾸 저희들이 개설을 할 수 있으니까요. 현재 1차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다음에 78페이지

(「77페이지요」하는 이 있음)

77페이지요? 네. 하세요.

○尹弘老委員 성북발전연구팀 집기 구입비가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성북발전 연구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관서당 경비로 신문구독료 인상분이

○委員長 徐化錫 신문은 내일 하시죠. 신문은 문화공보실 내일 하니까. 성북발전 연구팀에 대한 것만

○尹弘老委員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이 상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구청의 경쟁력을 높이고, 하여튼 제일 우선한 것은 주민편익증진 그다음에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라든가 제도 개선사업 기타 아이디어 이런 것을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개발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계장급 한 사람을 팀장으로 해서 직원 3 사람을 우선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라인에는 현재 기획예산과, 총무국 이렇게 라인을 정해서 우선 발족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구청의 Think Tauk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주민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구정을 발전시킬 수 있겠느냐 아주 전담팀으로 다른 사무는 보지 않고 하루종일 그 생각만 하는 Think Tauk팀을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창설하고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러가지 아시다시피 구청이 아주 공간이 부족하고 어디 적당한 곳이 없어서 생각끝에 위에 자료실 반을 나눠가지고 사무실을 꾸미다보니까 여러가지로 현대식 사무실로 꾸미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에서 사무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다 보니까 OA사무실 이렇게 갖춰졌습니다.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委員長 徐化錫 네, 최동환간사님

○崔東煥委員 지금 팀장이 어느 계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總務局長 白亨奭 지금 우리 의회 협력계장인 김동석계장으로 되어있습니다.

○崔東煥委員 의회협력 관련 업무하고 다 감당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總務局長 白亨奭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회협력계장님이 아주 유능한 계장님으로 그렇게 판단이 돼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저희가,

○崔東煥委員 제가 걱정되는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 번 우리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일본구청에는 국제교류계라고 있습니다. 그

계에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에 다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에서는 직원들을 동남아 각 나라로 1년씩 연수, 파견 연수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시키고 가서 말 배우고 그 나라 정치, 경제, 문화를 배워와서 그 나라 관련업무를 맡기고 있거든요. 그런 고유업무를 맡기기 이전에 전제가 되는 게 직원의 인사권의 보장이거든요. 그쪽 담당직원들을 다른 단체나 다른 부서로 보내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 하에서 그런게 가능한데 과연 성북발전연구팀에 유능한 직원들을 모아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 직원들을 국내외에 연수를 시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켜가지고 과연 그 직원들이 성북구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할 수 있을 것인지, 제가 걱정되는 것은 그렇게 연수를 시켜서 그 사람의 자질을 높여놨는데 그 사람이 다른 구로 인사발령이 나가버려서 공염불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금 현재 생각도 다른 업무는 보지 않고 그 업무에 전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창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일류기업인 삼성에도 이런 팀이 있는데 거기 팀들은 복장부터 시간, 전부가 자유고 회사를 위한 일이 무엇인가 그것만 찾고 다니는 팀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발전팀도 그런 성격의 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조하기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조금 전에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능하면 국내외 연수를 보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있고 일차적으로 지금 국내 몇 개 도시를 출장을 보냈습니다. 검사검사해서 여러 도시를 출장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보내지 않으면 다른 데로 갈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러니까 그 점은 염려를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尹弘老委員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연구팀장이 다른 업무는 차제하고 이 업무에만 전념토록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협력계장이라는 직책이 직제상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있는 자리입니다. 그런

데 어떻게 해서 이 성북발전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저희가 당초에는, 제가 말씀을 좀 덜 올렸습시다마는 당초에는 전념하는 팀으로 그렇게 구상을 해서 현재 직원들은 다른 업무는 안보고 그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마는 팀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적당한 인재가 얼른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의회협력계장 김동석 계장을 우선 당분간 겸직을 시키고 진행과정에서 가령 의회협력계장을 그 팀에다 전념을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을 선발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俞鎭武委員 제가 이렇게 한번 꼬집어보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물론 의회가 별볼일 없으니까, 의원들이 구청에 가서 설자리 한 곳 없고 의원들을 보필해야 될 협력계가 만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아마 의원들이 들으시나 구청담당관들이 들어도 좀 언짢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방을 구상하고 뭐 하고, 의회는 지금 탄생한지가 5년이 넘었는데도 의회 의원이 구청에 가보면 꼭 동냥은 것 같아요. 이방 저방 안다니는 데가 없고 전부 의원들은 여기 저기 가서 구걸하는 형태라고, 제가 이것을 꼭 꼬집고 넘어가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손쉽게 이런 것을 자기들은 하면서 우리 의회의 비중이 이렇게도 약한가 하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꼬집어 놓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의 발전이 우리 성북구 구민 전체를 위해서 노력한다니까 더욱 마음 든든하고 그분들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는 편안합니다. 그래서 구의회 일을 안하고 관계없는데 제가 꼬집은 이유는 국장님이 감안하였다가 다음에 관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꼬집었습니다. 감사합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또 다음으로 넘어가죠.

78페이지, 79페이지까지 보세요. 일용인부임,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80페이지?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김진권위원장님.

○金振權委員 김진권위원장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제가 여쭙보겠습니다.

여기 구청사 자동경보장치 유지비, 그것이 있는데 그게 유지비인지 수리비인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李鍾淳 자동경보장치 유지를 하는, 용역회사에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에 주는 유지비입니다.

○金振權委員 유지비입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이게 월 얼마 12개월, 이렇게 해서 본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172만 8,000원 이것은 그러면 월 얼마, 몇개월분으로 인상되는 겁니까? 아니면,

○總務課長 李鍾淳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자동경보장치를 저희 구청 3층에만 설치를 했었습니다. 3층에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본 결과 많은 효과가 있어가지고 전 구청으로 각 층에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개월간 소요비용이 15만원이었는데 전 층으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용역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용역비가 전 층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28만 8000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金振權委員 그러면 증설한 건 언제 증설하는 거예요?

○總務課長 李鍾淳 1월 1일부터 증설을 했습니다.

○金振權委員 증설을 1월 1일부터 했다? 작년 12월 본예산에 96년도 월 15만원, 12개월을 해서 18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금년 1월부터 만약에 증설할 계획이라면 본예산에 이게 올라왔어야지, 왜 지금 올라왔느냐는 제 말씀입니다.

○總務課長 李鍾淳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이것을 설치해 가지고 충분히 전층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충분한 검토가 좀 늦어져가지고 불가피하게 1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됐더라면 지난해 연말에 할때 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충분한 검토가 덜 끝났기 때문에 연말 예산에 올리지 못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尹弘老委員 자산취득비 중에서 카폰 전화기를 25대를 구입하셨는데 전화기 사용처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總務課長 李鍾淳 이게 카폰 전화기가 아니고 키폰전화기입니다. 각 실·과에서 지금 쓰고 있는 전화기인데요, 과를 신설한다거나 재개발과처럼. 그 다음에 어떤 방을 신설한다든가 전화기가 민원담당관실처럼 모자라가지고 증설해 줄 때 쓰는 단순한 전화기 구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 대에 15만원씩 해가지고 키폰 전화기 구입대금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없습니까? 8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82페이지, 83페이지. 예, 최동환위원장

○崔東煥委員 지금이 9월달인데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에 분기별로 2분기분을 산정한 것입니까?

○社會進興課長 金永洙 4분기 중에서 전반기는 안주고 3, 4분기만 주는 겁니다.

○崔東煥委員 3분기가 9월달부터 시작되나요?

○社會進興課長 金永洙 예, 9, 10, 11,

○崔東煥委員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를 구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社會進興課長 金永洙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성남연수원으로 갈 때에 2박3일에 얼마, 5박6일에 얼마 하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있어서 각 구청마다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崔東煥委員 작년 정기회 예산에 이게 있었습니까?

○社會進興課長 金永洙 작년 정기회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올리지도 않았습니까.

○崔東煥委員 그때는 안올렸고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뭐니까?

○社會進興課長 金永洙 그때 당시에 안올렸다가 지금, 회비를 사실상 안주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면 800만원 정도 소요되는건데 반을 잘라가지고 후반기에 반정도 보내는 것으로,

○崔東煥委員 신규지도자에 대한 교육이 아니고 기존의 지도자들을,

○社會進興課長 金永洙 기존도 있고 신규도 있고 그렇습니다.

○宋夏星委員 장학금에 59명을 규정해놨는데 59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중학생 59명,

○社會進興課長 金永洙 그것은 새마을지도자의 7%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예산지침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보통 7% 정도가 자녀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宋夏星委員 7%가 59명입니까?

○社會進興課長 金永洙 예.

○俞鎮武委員 지금 구청장기 어머니 배구대회가 있는데 우리 구에는 어머니 배구밖에 없는 겁니까?

○社會進興課長 金永洙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어머니 합창단이 있고요, 부녀자들 모임으로서는 지금 어머니 배구단밖에 없습니다.

○俞鎮武委員 만 것은 조직이 뭐.

○社會進興課長 金永洙 예, 아직까지는 안돼 있습니다.

배구만, 여자들이 하는 것은 순수하게 배구 하나 밖에 없어요.

○俞鎮武委員 그리고 말입니다. 이 '새마을'자 붙지않고 단 장학금으로 나가면 안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물어봅시다.

○社會進興課長 金永洙 그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가 지금 구에서 조례 제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俞鎮武委員 실례를 들어서 이 '새마을'을 빼버리고 통·반장 자녀들 장학금으로,

○社會進興課長 金永洙 통·반장은 따로 있습니다.

○俞鎮武委員 따로 있습니까?

○社會進興課長 金永洙 네.

○俞鎮武委員 이 새마을은 우리가 작년도에 이것을 삭감할때는 굉장히 거부감 이런 것을 많이 느껴 가지고 했는데 또 이렇게 추경까지, 급한 것이어야 추경에 올라올 것으로 하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이 또

○社會進興課長 金永洙 당초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갖다가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제가 사회진흥과를 맡은 지가 1개월도 안되어서 사실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통과를 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타구에도 25개 구

청에 다 있습니다. 사기 문제도 있고 또 타 구청의 개인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尹弘老委員 문제는 이 장학금이 지금 유진 무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지난번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지금 이 장학금을 꼭 추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면 안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社會進興課長 金永洙 지침은 없습니다. 이것은 처리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내 무부에서 96년 1월달에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라고 내려왔었는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올렸다가 행정위원회에서부터 삭감되었습니다.

○尹弘老委員 조례 규정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얘가지, 꼭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잖아요.

○社會進興課長 金永洙 물론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은 사실상에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보다는 구의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연말에 편성이 되었어야... 조례가 아니고 어떤 지침이라든지 그러면은 구청 단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구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야 옳았는데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실수를 해 가지고 그만...

○崔東煥委員 위원장님, 봉사단체가 새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초창기 취지는 새마을을 지원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했다고 보지만은 지금은 엄연히 사회단체로 위상이 그렇게 잡혀가고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 아니면은 다른 봉사단체도 많은데 시대 흐름에 맞춰가지고 조례를 그러면은 어떤 다른 봉사단체에 관련된 사람,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맞춰 가야지. 굳이 새마을을 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약에 조례를 그렇게 개정한다면은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식으로 반영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社會進興課長 金永洙 네. 조례가 바뀌어

지면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겠습니다.

○安傑瑤委員 위원장,

○委員長 徐化錫 네. 안걸용위원님,

○安傑瑤委員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과목, 세목별로 예산 편성 지침을 보면은 물론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 또 사정이 있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 예산 요구가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하지않은 예산은 즉 말하자면은 어떤 불가피하게 건설사업을 해야한다든가 건설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란다는 이런 예산 같으면은 몰라도 대개 지금 이것이 어떠한 항목을 지정해서 얘기가 아니라 전부 성북구 재정 자립도 여건상 이것이 벗어난 어떤 소비성 예산이다, 대부분의 예산편성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근거지침이 예산편성 지침이 어떻게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企劃豫算課長 宋政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지침이라는 것은 방향은 물론 구청에서 방향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래는 도로건설 사업에 많이 투자하자, 뭐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에 많이 투자하자 어떤 어떤 그런것은 있는데 그 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더 상위, 거기는 우리 재량입니다만은 그 위에 상위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데 그것은 그것을 위배했을 때에는 물론 법령에 위배된다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게 될 때에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는 상한을 정해 놓았습니다. 가장 상한하고 그 다음에 줄때 그 방법, 그렇게 정해 놓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줄 수도 있고 안 줄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은 되도록이면은 그 골격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찢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安傑瑤委員 그러면은 현재 국가적으로 경제가 안좋아 가지고 긴축정책들을 쓰고 지금 너도 나도 이런 차제에 성북구 지금 재정자립도가 약해서 시 조정교부금을 받아다가 이런 투자사업들을 하는데는 좋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런 소비성의 지나친 이런 예산편성이 좀 양심에 가책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형평에 벗어난

이런 예산이 짜여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저는 어떤 하나에 나열적으로 이기는 않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이 추경예산이 이런 소비성에 흘러가는 예산을 편성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꼭 우리 성북구의 형편이 이렇게 넉넉하게 예산을 사용해도 될 만한 위치에 서 있는가, 이것을 묻고 싶은데 우리 국,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내일 조정해서 결정될 때 얘기가 별도로 있겠습니까만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白亨奭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제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구민의 세금, 어떻게 보면은 아주 피나는 세금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성북구가 지금 발버둥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든지 소모성 경비라든가 일반행정비는 특히 추경 본래 의미를 쫓아서 소모성이라든가 행정지원비는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충언을 잘 받들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金振權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徐化錫 김진권위원님.

○金振權委員 구청장기 어머니 배구대회 지원 그래서 3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 왜 빠졌으며 작년도에는 구청장기 어머니 배구대회 지원 명목으로 2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300만으로 50%가 인상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작년에 200만원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카네이션 어머니 배구대회 출전지원해서 50만원, 그리고 제7회 어머니 배구대회 지원해서 150만원 이렇게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 다음에 또 성북구 생활체육회 우리 성북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1,2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배구대회 명목으로 1,210만원 중에서 50만원이 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원해 준 체육회에다가 지원해 준 지원금에서 50만원하고 우리 자체예산에서 200만원, 300만원 가고 그런데 그것이 원인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永洙 김진권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배구대회에 지원된 것이 한 25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것이 구청장기 배구대회를 하는 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600에서 700 정도 들어갑니다.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구청장기 그러니까 이것 외에 배드민턴이나 축구라든지 테니스 이런데에 250만원 정도 지원하고 배구에 2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것은 구청장기에 지원하는 돈이고 이번에 3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지금 구청장기에 지원할 돈이 있습니다. 200만원은, 있지만은 이것은 왜 300만원 추가로 했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법이 기부금품 금지법이라는 것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회원이 내는 돈이 아닐 경우에는 어떤 특정목적에 의한 돈을 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이나 축구, 이런 남자분들이 하는 것은 자기가 축구를 하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들이 10만원, 2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안걸리지만은 여자들은 이 사람들이 한달에 1만원씩 거두어 가지고 지금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회를 할려고 하면은 천상 어디가서 손을 벌려야 되는데 그런것이 법에 금지가 되어 버리니까 어디가서 손 벌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한 250만원 그 다음에 300만원 가지고 자기네들 자체에서 돈 100만원 보태고 해서 65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구청장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金振權委員 그러면은 그 다음에 생활 체육회에서 50만원 지원할 것 아닙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永洙 그것은 50만원 지원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것은 생활 체육회가 아니고 성북구 체육회라는 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체육회에서 내는 것이 체육회에서 1년에 회비로 거두는 돈이 한 1,800만원, 특별회비로 해서 한 300만원 해 가지고 한 2,100만원하고 우리가 1,200만원 지원하고 3,000몇백만원 쓰고 있는데요 여기는 배구대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 배드민턴 모든 대회를 할 적에 체육회 명의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1,210만원에서 지원한다기보다는 체육회에서

회비로 지원한다고 보시는 것이

○金振權委員 내가 체육회에서 50만원 지원 내역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해서 1,210만원을 지원하면은 민간경상 보조금에 지출 내역이 체육회에서부터 성북구로 옵니다. 오는데 그 지출 내역중에서 보면은 배구대회에 50만원 지원했다는 명목이 나와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보면은 이중 삼중으로 우리가 아까 안결용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소모성 경비에 엄청난 경비를 예산을 소모하지 않나, 제가 이렇게 보고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永洙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50만원을 내고 물론 저희들이 1,200만원을 분기에 400만원씩 도와 주고 있는데 거기서 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쓰는 구좌는 통장을 달리해 가지고 그 분들이 내는 회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400만원은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체전하는데 경비로 한다든지 이런데에 지원하는 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형식상으로는 구좌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니 어떻게 구예산에서 지원한다고 그래도 저희들은 할말은 없겠습니다.

○金振權委員 그것이 왜 그러느냐하면은 체육회에서 행사별 지원 실적이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그러면은 1,210만원 갖다가 어디다가 썼느냐 하고 구청에서 물어볼 것 아니에요.

○社會振興課長 金永洙 그것은 다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金振權委員 자료를 내라고 물어보면은 1,210만원 쓴 내역서를 구청에다가 제시를 할 적에 각 체육단체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적게는 1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0만원, 200만원까지 지원했다, 그래서 월별로 날짜별로 해서 구청에다가 자료를 딱 제출합니다. 제출하는데 그것이 민간경상보조금을 도로 구청내에 각 체육단체에 지원금으로 주라고, 우리가 준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체육회에 전체 예산에 보태쓰라고 준 것이냐,

○社會振興課長 金永洙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단 1,2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라는 명목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金振權委員 1,210만원은 지원을 했는데 그 지출 명세서는 전부 대회의 지원금으로만 나갔지 다른 경성비나 운영비에는 지출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社會振興課長 金永洙 저희들이 체육회 운영이라는 것은 저희 직원이 운영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운영비가 특별히 따로 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자료를 드린 것은 1,210만원에 대한 자료를 드린 것이 아니고 한 2,500만원에 대한 자료를 드렸을 겁니다.

○委員長 徐化錫 김진권위원장,

○金振權委員 네. 되었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네, 내일 또 계수조정을 할 때 다루기로 하고요. 또 84페이지, 윤홍노위원장

○尹弘老委員 일반 수용비중 시민의 날 행사, 또 차량임차료, 보상금과 일반운영비등으로 나누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장 말씀은 기부금품 모금금지법이 새로 입법돼서 시행된 것 처럼 말씀하시지만 과거로부터 오래전부터 있던 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그러면 이러한 비목에 드는 비용들은 지금까지 기부금품 모집에서 했다는 얘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비목에 속하는 사항을 행사를 추진했는지 왜 새로이 여기에다 개정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振興課長 金永洙 이것은 윤홍노위원장 말씀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시민의 날 행사라는 게 사실상 이 근래 한 3년 동안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행사를 준비를 했다가 무슨 성수대교라든지, 무슨 삼풍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터져가지고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무산이 되어 버리고 실제로 행사는 진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할 수 있기에 시민의 날 행사는 사실상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것을 2,800만원을 더 올렸냐 하면 예년에는 그렇

게 시민동원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
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잠실체육관에서 하
다 보니까 시민 동원을 한 2,500명 정도를 해
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게 본청에서 계획서
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사람 한 사람 동
원하는데 최소한도 그날 도시락 하나에 음
료수 2개만 준다고 해도 거기에다 임차료
를 합한다면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돈
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
이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돈들이 들어가
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총무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하게 되
는 겁니다. 왜그러느냐면 이것은 동으로 전
부 다 보내서 동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로 예산 형식상 올려놓은 것
이지 실질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시민체육대
회하면서 써야 될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상
외로 시민을 많이 동원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尹弘老委員 그러면 금년도 이내에 시에서
시민의 날 행사를 잠실경기장에서 계획을
하고 있던 말씀입니까?

○社會振興課長 金永洙 네, 10월 28일날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박시준 위원님.

○朴時俊委員 84페이지도 하시는 거죠?

○委員長 徐化錫 네, 84페이지, 85페이지
같이 하죠.

○朴時俊委員 직원 업무용 수첩제작에 대해
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6,000원에
1,731명의 구동직원을 준 것으로 이렇게 내
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직원들이
자기들이 책상에 놓고서 볼 수 있는 그런
크기의 수첩인지 주머니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수첩인지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줘도
각자 보는 사람은 보겠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토
목과에서 무슨 제설 이런 관계는 다 수첩
으로 나와서 각자에게 주곤 하는데 그것을
몇사람이나 보겠나 이겁니다. 민방위 수첩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아는데 계별로 하나씩
둘씩 비치해가지고 직원들이 보는 것이 낫
지 않을까

○總務課長 李鍾淳 아닙니다. 박시준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수첩은 지

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업무
용 수첩은, 그래서 직원들이 이것을 한권씩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현장에 가서 메모도
하고 회의사항이 있으면 회의 때 메모도
하고 그래서 그때그때 사항을 이렇게 깨알
같이 기재해 가지고 잃어버리지 않고 업
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내년도 '97년
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올릴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내
년도 예산에 이것을 올려서 구입을 하다
보면 이게 1월달에 제작 의뢰를 한다그래
도 최소한도 2월 중순쯤 돼야 이것이 납
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중에 제작
을 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줘야 1월 1일 부
터 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직원들이 필
히 한권씩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주
고 구입하는 경향도 있고 어디가서 얻어
쓰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1월
1일부터 나눠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득이
추경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委員長 徐化錫 안철용위원님

○安傑瑤委員 철도승차권 발권 단말기 500
만원 구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구입을
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 장소에다 놓고
관리하는 인원은 직원은 몇명이나 지금 운
영 방법은 실현 계획은 어떻게 하시는 것
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總務課長 李鍾淳 민원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제가 거기 있다 왔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
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광안내서비
스센터에서 전국의 기차표를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발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발매를
하고 있는 것은 서울역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통해서 그쪽의 컴퓨터를 통해서 전
화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몇 호실
몇번 좌석을 전화를 받아서 일일이 수기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잘못하다보면 그 좌석
번호를 착오기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고
그 전화가 걸리지 않을 때는 이 발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단말기를 설치하면 직접
여기서 그 발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오래 기다리지 않으셔도 되고 다음
에 그 전화를 통해서 하게 됨으로써 좌석번

호 착오라든지 그런게 없게 하기 위해서 이 발권기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安傑瑤委員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하기까지의 우리 직원들이 몇명이나 또 예산이 얼마나 지금 뒤 따라 가는 예산이 소모가 됐는지,

○總務課長 李鍾淳 현재 저희 구 직원은 한 명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安傑瑤委員 어느 위치에다가 이 단말기를 놓고,

○總務課長 李鍾淳 현재 민원담당관실 1층 출입구 앞에 관광정보센타라고 별도로 데스크를 만들어 놔습니다. 거기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그 민원인들이 오면 그래서 철도승차권을 그냥 자동으로 그 티켓을 발급해 드리는,

○安傑瑤委員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뒤 따라 가는 총 예산지출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참고로.

○總務課長 李鍾淳 현재 별도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직원은 있는 직원을 활용을 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철도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올렸고 그냥 철도표를 팔면 그냥 파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판매금액의 5%를 수수료로 철도청에서 받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이 단말기 구입대금도 결국은 수입금으로 해가지고 메꿀 수 있게 되겠습니다.

○安傑瑤委員 알겠습니다.

○金振權委員 가만히 있어요 말씀 나온김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할게요. 지금 500만원 중에 단말기 값이 얼마고, 발권기 프린터기 그 값이 얼마고 뭐 모뎀 값이 얼마고 케이블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정도 됩니까?

○總務課長 李鍾淳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민원담당관실에서 자세한 내역을 가지고 오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내일 민원담당관실장 올라올 때 미리 알아가지고 올라올 수 있도록 다음 85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86페이지 박시준위원님.

○朴時俊委員 동소문동 청사 이전에 따른

기타부대비용에 이사 비용도 포함됩니까?

○總務課長 李鍾淳 네, 이게 이사 비용입니다.

○朴時俊委員 얼마예요?

○總務課長 李鍾淳 이사비가 저희 400만원을 잡았고 그 다음에 그날 행사비용을 200만원을 지금 동소문동에서 요청을 해서 전체 600만원을 잡았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127페이지하고 128페이지 민방위과 병사관리. 뭐 이거 없잖아요? 우리 성북구가 30개동인데 어떻게 21개소만 설치합니까?

○民防衛災難管理課長 崔泓淵 현재 비상소화장치함 설치에 따라서 관리는 성북 소방서에서 하고 있고 인근 주민이 사용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서와 협조해서 별도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委員長 徐化錫 다음에는 특별회계를 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없죠?

(「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 없으면 '9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중 총무국 소관 심사의 건을 마칠 것입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13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時33分 散會)

○出席委員 13人

徐 化 錫	崔 東 煥	高 允 根
尹 晚 丸	金 壽 榮	宋 夏 星
崔 桂 洛	朴 時 俊	尹 弘 老
金 振 權	安 傑 瑤	俞 鎮 武
申 宗 鉉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金 鎮 永
---------	-------

○參席公務員

總 務 局 長	白 亨 奭
總 務 課 長	李 鍾 淳
企 劃 豫 算 課 長	宋 政 宰
社 會 振 興 課 長	金 永 洙
民防衛災難管理課長	崔 泓 淵